

대학(교)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

2003. 2

교육인적자원부
(기획관리실)

I. 목	적	1
II. 추진배경		1
III. 기본방향		2
IV. 법적근거		2
V. 중점추진과제		2
1.	성희롱·성폭력 관련 학칙 또는 규정 마련 시행	2
2.	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	3
3.	성희롱·성폭력 예방실태 점검	4
4.	열린 성희롱·성폭력 상담실 운영	4
5.	우수기관 예방자료 공유체제 구축	4
6.	전문가 지원체제 운영	5
7.	기타사항	5
VI. 행정사항		5

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

제정 2001. 4. 17. 여성부고시 제2001-2호

개정 2002. 10. 28. 여성부고시 제2002-1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·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계획의 수립)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 내용)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2. 당해 기관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3. 당해 기관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5.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

제5조(교육 방법 등)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,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·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아니

한다.

②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성희롱 예방조치) ①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상담·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
2.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
3.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
4. 성희롱 예방 교육·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
5.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

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
2.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
3.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
5.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6.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
7.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·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
8.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·처리기한·처리체계·처리방법·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대학(교)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

I. 목 적
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및 건전한 성문화 육성
- 성희롱·성폭력 민원전담창구의 설치·운영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민원의 조사·처리 체계 구축
-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

II. 추진배경

- 2002년도 여성부의 대학(교) 성희롱 실태 조사결과 대학(교)내 성희롱 인식이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임

- 조사대상 남학생의 절반 정도가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,
 - 응답자의 57%가 교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,
 -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도 16.4%에 불과
 -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교육기관 접수건 46건중 19건이 대학(교)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율이 41.3%(’99.7~’02.8)
- ※ 자료출처 : 여성부 개선65260-366(2002.9.16)

- 2002년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접수결과 참여율 저조
 - 대학(교)의 교육실시 현황은 85%, 대상인원 대비 참여율은 35.9%임
- 「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」을 개정(’02.10.28), 교육 및 예방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, 공공기관의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학칙 또는 규정 제정 현황
 - 대상기관수 352개교, 제(개)정 기관수 333개교 : 94.6%(2002.6.24기준)

III. 기본방향

- 대학(교)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 게재되어야 할 기본 내용을 알려 각 대학(교)에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 제시

- 각종 대학(교)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
- 대학(교)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체계 구축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강화 및 피해자의 보호 대책 강구

IV. 법적근거

-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
-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(여성부고시 제2002-1호)
-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

V. 중점추진과제

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학칙 또는 규정 마련 시행

가. 학칙 또는 규정의 주요내용

- 성희롱·성폭력의 정의
- 성희롱·성폭력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-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
- 성고충 민원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성희롱·성폭력 민원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
 - 성희롱·성폭력 민원의 신청과 상담·조사의 방법 및 절차, 처리기한 등을 규정
-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
-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
- 성희롱·성폭력 고충내용 및 상담·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
-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나. 대학(교)내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제고 : 30%

2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강화

○ 교육대상 : 관리자, 교원(교수, 강사), 조교, 직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

○ 교육횟수 : 연 1회 이상(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1회 이상 실시)

○ 교육내용
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- 성희롱·성폭력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(피해자 보호내용 포함)
-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
-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○ 교육방법

- 교육대상별(교수, 직원, 학생) 교육실시
 - ※ 신입생 오리엔테이션, 신입교수 연찬회 등 활용
- 전문가 강의, 시청각교육,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 이용
- 자율적 방법을 적용하되,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※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·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함 :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5조

3.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실태 점검

○ 대상 : 대학(교)

○ 점검 시기 : 5~6월, 10월~11월(연 2회)

○ 점검 방법

- 사전 통지 없이 불시 점검 병행 예정임

※ 12월 중 우수기관(담당자)에 대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계획

○ 점검내용
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관련 학칙 또는 규정 제정시행여부
- 성희롱·성폭력 민원 전담창구 운영여부
-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처리 실태 전반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·시행 여부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학생 지도 현황 등

4. 열린 성희롱·성폭력 상담실 운영

○ 목적 : 상담활동강화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효과를 높임

○ 추진내용

- 대학(교) 홈페이지에 「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」 운영
- 대학(교)별 인터넷·전자우편 이용 비대면(비대면) 상담활동 확대
- 상담절차·상담내용 등 상담활동 홍보 강화

5. 우수기관 예방자료 공유체제 구축
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우수기관의 자료 공유체제 구축

6. 전문가 지원체제 운영

- 목적 : 전문인력의 상담지원으로 예방효과 및 가해자·피해자 상담 치료 지원 도모
- 구성 : 외부 전문가(법률가, 전문상담가 등)로 구성하되, 대학(교)별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
- 운영내용 :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, 상담과 조사·처리 등의 협조

7. 기타사항

-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
- 성희롱·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철저
-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

VI. 행정사항

가. 대학(교)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·추진하시기 바람

나. 보고사항

- 2002년도 기관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: 연 1회
 - 소속, 직위, 성명, 사건개요, 조치결과, 비고
(사건개요는 육하원칙에 의거 20자 내외)
 - 제출일자 : 하반기 별도공문 시행예정(국회요구자료)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보고 : 연 1회(12월 말, 별도 공문 시행 예정)